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20호

「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강 릉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정비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다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정비(안 제5조)
- 라.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마. 카메라 등 기계장치 점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○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
O 이메일: tjvy9207@korea.kr

○ 팩 스: 033-640-4070

붙임 1.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조례 제 호

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"를 "강릉시 공중화장실 등설치 및 관리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""공중화장실"이란"을 "사용하는 용어의 뜻은"으로, "따른 공 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 다"를 "따른다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적용의 범위)"를 "(적용 범위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3조제2호의 "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설치·관리자의 책무)"를 "(시장의 책무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①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실등"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,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조치를 해야 한다.
-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·관리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.
 - 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
 - 2.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- 3.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장이 설치 ·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
- 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. 다만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관리자로 한다.
 - 가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
 - 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"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"을 "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"을 "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관리인의 교육)"을 "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「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제6조"를 "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"로, "수립하여 교육을 실시"를 "수립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직접실시 하기"를 "직접 실시하기"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중화장실"을 "공중화장실등"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"를 "(공중화장실등의 유지·

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중화장실"을 "공중화장실 등"으로, "화장실을 항상"을 "공중화장실등을 항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 청소
- 6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

제10조 중 "공중화장실"을 "공중화장실등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영 제6조"를 "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제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힞}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| 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조례 관리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중화장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 실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 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 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중화 제2조(정의) ----- 사용하는 장실"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용어의 뜻은 -----관한 법률 | (이하 "법"이라 한 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 ----- 따른다. 개방화장실 • 이동화장실 • 간이 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 다. 제3조(적용의 범위) ① (생 략) 제3조(적용 범위) ① (현행과 같 음) ②법 제3조제2호에서 "「관광 | ② 법 제3조제2호의 "조례로 정 진흥법 | 제2조제6호 · 제7호 · | 하는 규모의 시설"이란 「관광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・ 진흥법 | 제52조제1항과 같은

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・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 라 함은 「관광진흥법」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「관 광진흥법 _ 제5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관광지 로써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 설을 말한다.

③ (생 략)

제4조(설치 · 관리자의 책무) 공중 화장실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ㅣ 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설치기준) 「공중화장실 등 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이하 "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의 설

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| 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강릉시 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 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 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 실(이하"공중화장실등"이라 한 다)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, 안전한 사용환경 조 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다.

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 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 • 관 리한다.

공중화장실등을 설치 · 관리하 영"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서 |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

- 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한다.
- 1.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 사로와 배수구 등을 설치
- 2. 방수를 위하여 바닥과 내벽 에 타일이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실시
- 3. 건축물의 신축·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여성화| 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 실의 대·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
- 4. 장애인용 화장실은 「장애인 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」제2조제1항을 따른다.

<신 설>

- 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 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
- 2.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 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<u>할</u> 것
- 3.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. 관리시설 등 을 설치할 것

- 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시장이 설치 ·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등
 - 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 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 의 공중화장실등. 다만,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강릉시장 제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설 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 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·관리비용을 보 조할 수 있다.

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시장은 제 <u>「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</u> <u>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</u> <u>다)제6조</u>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

	중화장실등의 설치・관리자로
	<u>한다.</u>
	가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
	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
	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
	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
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
	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
	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
	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
	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제	6조(위탁관리 등) ① <u>시장이 설</u>
	치한 공중화장실등
	,
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
	에게 예산의
제	7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
	①
	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	시행규칙」 제6조

리인(이하 "관리인"이라 한다)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<u>직접실시 하기</u>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수 있다.

제8조(편의용품 등의 비치) <u>공중</u> <u>화장실</u>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갖 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, 설치하 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유지관리 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<u>화장실을 항상</u>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 다.

1. 하루 3회 이상 청소

	<u>수립</u>
	
	· ②
	<u>직접 실시하기</u> -
제	8조(편의용품 등의 비치) <u>공중</u>
	<u>화장실등</u>
	•
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	9조 <u>(공중화장실등의 유지·관</u>
	<u>리)</u> <u>공중화장실등</u>
	공중화장실등을 항상
	<u>.</u>
	· 1.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

2. ~ 5. (생 략) <신 설>

제10조(관리카드의 비치) 공중화 저 장실을 설치 • 관리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・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[본조제목개정 2011.01.12.]

- 제16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유 저 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 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.
 - 1. ~ 3. (생 략)
 - ②·③ (생 략)

청소
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 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 었는지 수시로 점검

제10조(관리카드의	비치)	<u>공중화</u>
<u> 장실등</u>		
		.
제16조(유료화장실의	의 신고) ①

----- 「공중화장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☐ 법	규	명 :		
0	성명](단체	명) :	
0	주		소 :	
\bigcirc	여	라	치 ·	

제ㆍ개정안 내용	의	 견	비고